

2023학년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업체 전문학사 모집안내



산업체 전문학사(위탁교육생) 모집안내

1. 산업체위탁교육이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2, 교육부 예규 제26호(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과 2023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교육을 해당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야간교육과정을 거쳐 정규학생과 동등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제도입니다.

2. 특전

- ① 산업체 위탁생 무시험 특례입학(성적과 상관없이 서류만 심사)
- ② 전문학사 학위 수여(일반학생과 동일)
- ③ 졸업 후 4년제 대학교 편입 및 전공심화과정을 통한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④ 산업기사, 사회복지사 등 학과 관련 각종 자격증 취득 가능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현재** 재직 중이며, 재직 중인 사업장에 **4대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합니다.

- ① 산업체에서 현재 근무 중인 자(9개월 이상 경력자) : 2023. 03. 01 기준
- ② 재학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자
- ③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작성 시 산업체장의 직인(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
- ④ 통학이 가능한 지역 내 산업체 근무자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 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9개월 경력 없이 재직중이면 입학 가능하나, 동 과정 입학 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4. 전형일정

구 분	일정/기간
접수기간	2022.11.07.(월) ~ 2023.01.13.(금)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접수 : 본관 1층 입학관리처(102호) 우편접수 : (46639) 부산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입학관리처
합격자 발표	2023.01.19.(목) 16:00(예정)
합격자 등록	2023.02.07.(화) ~ 02.09.(목)
추가모집 및 등록	2023.01.16.(월) ~ 02.28.(화)

5.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모집인원	비고
재난안전시스템과	15	※등록인원 15명 미만인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인원이 15명 미만이라도 개설 할 수 있음

6. 장학혜택

구분	장학 혜택
입학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체특별장학금(수업료 50%)
재학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체특별장학금(수업료 50%) ※ 지급조건 : 매학기 평점평균 2.5이상(※2022년 장학 기준) 기타 성적우수, 생활보조, 국가유공자(자녀포함), 형제/자매 장학 등은 본교 장학규정에 준하여 지급 합니다.

※ 장학 혜택 중 입학금 감면은 '교육부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등록금(2022학년도 기준)

학과	입학금	학기당 수업료	합계(등록금)	비고
재난안전시스템과	211,200	3,045,000	3,256,200	

※ 2023학년도 등록금은 “교육부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제출서류	직장인이 지원할 경우	대표자가 지원할 경우
1.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원서	○	○
2.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산업체 대표직인 반드시 날인	○	○
3. 재직증명서 ※직업군인 복무확인서 제출	○	×
4.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인근 초·중·고교 행정실 발급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대학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	○	○
5. 직장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가지)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 (*농지원부, 어업 인허가 증명서 등) • 단, 보험별 적용 제외 대상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발급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
6.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	○
7. 소득금액 증명서(종합소득세 증명용) ※ 납세증명서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	○
8. 농지원부 또는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1차 산업 종사자에 한함 (영농인, 어업인 등)

- ※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함
- ※ 재직기간은 4대 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함
- ※ 전(前) 산업체 경력을 인정받아야 할 지원자는 공적증명서 발급 시, 현재까지 재직해 온 전체 산업체 이력내역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 외국 고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함 (외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는 반드시 번역 후 법률사무소 등에서 공증 받아 제출(입증서류는 입학관리처로 문의))
- ※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9. 보험가입 확인서 발급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발급/신청 ⇨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10. 산업체 범위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②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⑥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⑧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11. 유의 사항

- ① 산업체 근무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거나, 타행정 구역인 경우 교육장과 직장의 거리를 7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 ② 재직기간은 제출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의 가입 기간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이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 ③ 4대 보험 가입 공적서류는 입학 후 매 학기 제출하여야 하며, 2학기에는 4대 보험 증명서와 일치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④ 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 교육과정 이수자(2023년 2월 졸업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해야 합니다.
- ⑤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12. 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안내

□ 입학취소

- ① 입학 전 산업체를 퇴직하거나, 입학 자격 최종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023.3.1.기준)
- ② 입학 전 산업체를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직업과정 수료예정자로 지원한 자가 졸업(수료)하지 못하거나,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적처리

- ①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 2회(2월, 8월)
- ② 퇴직 시 제적 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
 - 비자발적 퇴직 시 산업체위탁교육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③ 기타 :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입학취소 또는 제적을 결정한 경우

13. 입학문의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입학관리처 / Tel : (051)330-7273,7274,7293 / FAX : (051)955-3339

접수번호	※지원자가 기입하지 마시오.	지원학과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고등학교	졸업년도	
주 소 <small>(우편물 수령지)</small>	[우 :]	휴대폰	
		자택	

위 본인은 귀 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지원합니다. 위 본인

(인)

재직사실 증명원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체 가능)

산업체명		TEL	
근무부서		종업원수	업종
경력사항	현직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전직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주 소	[우 :]		
산업체명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20 년 월 일 대 표 :	(직인)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와 _____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위탁교육과정 및 인원)

-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
- ②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모집단위	위탁생수	비고
	학과		

※ 연도는 당해연도에 한할 수도 있고 장기 위탁계약인 경우에는 약정된 내용을 전부 포함함

제3조(위탁생의 자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3월 1일 기준으로 산업체 근무경력 9개월 이상이며, 현재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 교육과정 이수자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2023.2월 졸업 예정자 포함) 하나, 동 과정 입학 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하여야 함)

제4조(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 ① 위탁대상자는 재직 중인 산업체에서 추천한다.
- ②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또는 대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제적기준)

-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
- ①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
- ③ 비자발적 퇴직 시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6조(위탁교육생의 신분)

입학이 허가된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7조(기타 사항)

기타 사항은 대학의 학칙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20 년 월 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직인)	산업체명
		대 표
		(직인)

◆ 유의사항	
[제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자발적 퇴직의 경우 3개월 이내,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등)의 경우 6개월 이내 이직하여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비자발적 퇴직 시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학업유지 가능
[의무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23.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는가?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지원자 성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에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연락처, 모집단위(지방학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입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를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 성명, 주민번호,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모집차수,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제3자정보제공동의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성명,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 대입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모집군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함

지원자 성명 (서명)